#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3

#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 / 13

## 1. 목적

이 지침은 지역사무소 근로자의 업무장소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업무장소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 장소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책임과 권한

##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 1) 업무장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지원
- 2) 업무장소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기술지도 및 점검 조치 확인

## 3.2 관리감독자(팀장, 출장소장)

- 1) 업무장소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기술지도 및 점검
- 2) 업무장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지침 이행 및 업무장소 관리
- 3) 업무장소 내 문제점을 발굴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4) 업무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관리, 일상 안전점검표 작성,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3.3 근로자

업무장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지침 이행

#### 4. 일반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근로자): 단독업무 금지
- 2) 관계법령에서 단독업무를 금지하는 업무: 2인 1조 업무 수행
- 3) 해당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업무, 중 장비 사용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지휘자 지정을 요구하는 업무: 작업지 휘자 지정

## 5. 업무장소의 안전조치 사항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 / 13

#### 5.1 업무장소

- 1) 업무장소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업무장소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업무장소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업무장소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업무장소에 출입문(비상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출입문의 위치·수 및 크기가 업무장소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 ②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③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 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이 있는 2.5미터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② 손으로 조작하는 동력식 문은 제어장치를 해제하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 ③ 동력식 문의 비상정지스위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 ④ 동력식 문의 동력이 중단되거나 차단된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 5) 업무장소의 바닥 및 통로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구조물·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하중·적설·풍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내부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TLO TILL MATICA AS
군시민오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3 / 13

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 8)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9) 업무장소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붙임1]과 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하거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도장하여야 한다.
- 10) 업무장소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작업수칙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 5.2 통로

- 1) 업무장소로 통하는 장소 또는 업무장소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 부터 높이 2미터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 표준안전난간은 목재·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서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춘 상부 난 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 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110센티미터 이상 의 높이를 유지할 것
  - ②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 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 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④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
  - ⑤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 5.3 계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4 / 13

-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 제곱미터 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3)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 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답면으로 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난간의 높이는 90~1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②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
  - ③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④ 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⑤ 난간의 지주는 2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

## 5.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방호구역 등)

#### 5.4.1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기에 대한 조치

- 1)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소화를 위한 작동 외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 금지 및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T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	12 1 1 1 1 1 2 2 2 1 1 2
제·개정일자	2023.00.00.
" " " " " " " " " " " " " " " " " " " "	
개정차수	0
11011	
페이지	5 / 13
-11 -11 -1	3 / 13

게시하여야 한다.

#### 5.4.2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 1) 점검, 유지, 보수 등(이하 점검 등)을 수행하는 관계근로자 외 방호구역 등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2) 점검 등 수행 근로자 사전 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점검 등을 위해 방호구역 등 출입 시 미리 아래의 각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 \* 산소농도 18%이상~23.5%미만, 탄산가스 농도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 나. 수동밸브·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함 ※ 이를 임의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애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다. 방호구역 등 출입근로자 대상 반기 1회이상 교육\* 실시(신규 출입자 출입전 실시)
    - \*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
  - 라.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sup>\*</sup> 시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 \*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
  - 마.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4) 점검 등을 완료 후 방호구역 등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 5) 소화를 위한 작동 외, 소화설비 임의 작동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6)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 \*\*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을 보관한 소화용기 보관장소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6 / 13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 우려 시 관계 근로자 외 방호 구역 등 출입금지 실시 및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5.5 채광 및 조명

- 1)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5.6 조도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6. 자율점검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7. 붙임

붙임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붙임2. 작업안전수칙

(양식) 작업장 안전점검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7 / 13

## [붙임1]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 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지 표 지	3	3		8	0	3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 지	2. 경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 질 경고
		고 표 지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A	A	A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 · 변이 원성 · 생식독 성 · 전신독성 ·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 시 표 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A		3				0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0	9	0		0	0	1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8 / 13

	401	402	403		404		405	406	
4.									
	녹십자표지	응급구호	들것		세안장치	비성	상용기구	비상-	ㅜ
안 		표지							
내								100	
丑	1			9					
지	and the latest		Total Control	Ø.		HI	상용 기구		
^					2887.0			100	26
		September 1979	100000		200000			B.O.	
408		501			502			503	
407 지초비사 우측비상		허가대상물	직 언무	선명	취급/해체 입	보무	금지대싱	무직이 :	취급
I와득비송L			-	7 -	-	<b>-</b> 1	1		110
		장소			장소		2	험실 등	
'	5.								
		관계자외 출	후이 그기	라게	자외 출입금	17]	라게고	의 출입	그기
	관계자외	1					' '		
ASSAURACIONE MONECULINA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보관 <sup>-</sup>		석면	취급/해체	જ	발암물	질 취급	જ
10 mm		3.4	·				,	🛏 .	- 1 0
		보호구/보호	·복 착용	모호	구/보호복 최	· 나용	모호구/.	보호복 ?	작용
And Street Land Street				흡(	연 및 음식	물	흡여	및 음식	물
		흡연 및		П					_
		║ 섭취 긁	글지 [[		섭취 금지			취 금지	
	6.		717171 H.T						
					하여 안전을 늘				
6.		▶ 내 가정의 현	행복과 화목	l을 위	하여 안전을 늘	· 생기	<b>∤한다</b> .		
문자추가 시		▶ 내 자신의 ·	실수로써 동	료를	해치지 않도록	아전:	을 늘 생각	하다	
	和股份銀河田區)								м ог
예시문	20 to a			보로 인	!한 회사의 재신	1박 건	글글 방시	아기 뉘아	어 앤
		전을 늘 생	갹안나.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는업표준 017 016	
	안전・보건표지
016	302
	303
019	304
014	305
003	306
008	307
009	308
010	309
003	402
013	403
011	404
, E002	406
001	407
002	408
010 003 013 011 , E002	309 402 403 404 406 407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9 / 13

#### [붙임2]

##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실천합시다!

# KoELSA 안전운전 가이드



#### 도로 운행 전 필수 확인사항

- 도로망·지도를 이용하여 출발 전 경로를 선정합니다.
- 출발 및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운전을 합니다.
- 매스컴을 통해 일기예보, 교통상황을 파악합니다.
- 적당한 긴장상태를 유지합니다.



#### 출발하기 전 필수 점검사항

- 연료의 양은 충분한지?
- 냉각장치에서 물이 새는 일은 없는지?
- 엔진오일의 양은 적절한 수준인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 예비타이어와 교체시 필요한 공구 는 준비되어 있는지?
- 삼각대와 안전 전기장비 (신호봉)는 준비되어 있는지?



#### 도로 이용시 안전수칙 이렇게 지킵시다.

- -속도계를 자주 확인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필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2시간에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합니다.
- 과속/난폭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 차량운행중 DMB시청 및 휴대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 차량의 고장 등으로 주·정차 시 유의사항(고속도로)

- 자동차의 후방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야간 200m).
- 가급적 도로가 굽은 지역이나 경사진 지역을 피해 정차합니다.
- 노면상태에 따라 자동차 바퀴의 앞 또는 뒷면에 고임목을 설치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고속도로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출처 : 천안논산고속도로㈜ 홈페이지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0 / 13

# 통행 안전수칙

-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2.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할 것
- 3. 통행로를 통행하는 자는 좌측통행을 할 것
- 4.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통행할 것
- 5. 계단을 통행할 때는 여러 계단을 한 번에 건너뛰지 말고 한 계단씩 오르내릴 것
- 6. 건물의 출입구를 통행할 때는 유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7. 좁은 통로의 모퉁이를 통행할 때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뛰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충돌에 유의할 것
- 8. 통행로를 통행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뛰어가지 말 것
- 9.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위를 통행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따라 추락에 유의하면서 통행할 것
- 10. 투시되지 않은 출입문 등을 통행(개폐)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개폐 할 경우 충돌을 대비하여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할 것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_ ' _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1 / 13
1	

# 화재예방수칙

- 1. 금연수칙을 잘 지킬 것
- 2.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화기작업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할 것
- 3. 금연구역에는 가연성물질이 있음을 뜻하므로 가연성물질이 보이지 않더라도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 4.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용기에 모아 버려야 하며 보관시에는 밀폐하여 둘 것
- 5. 소화기의 점검, 소화액 보급 등을 철저히 하고 점검표를 붙여서 점검, 정비, 사용, 소화액 사용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 6. 소화기의 비치장소를 사전에 알아 둘 것
- 7.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알아 둘 것
- 8. 비상탈출구의 위치를 알아 두고 비상탈출구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둘 것
- 9. 소화기나 소방호스, 소화전은 정상으로 유지해 놓을 것
- 10. 휘발유, 석유, 납사 등에 젖은 옷은 즉시 갈아 입을 것
- 11. 관리감독자가 교육한 안전교육내용에 따라 인화성물질을 취급할 것
- 12. 경보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아 둘 것
- 13.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장소를 떠날 것
- 14.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리지 말 것
- 15. 페인트작업시에는 특히 화기에 주의할 것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2 / 13

# 물품저장 및 운송시 안전수칙

- 1. 관리감독자는 저장, 안전의 책임을 진다.
- 2. 사전에 물품 운송인과 안전사항을 협의한다.
- 3. 물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사항을 사전에 숙지한다.
- 4. 물품에 따라 기상과 창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5. 적재는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한다.
- 6.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적재한다.
- 7. 물건을 적재하더라도 통로는 필히 유지한다.
- 8. 야외에 적재할 때는 받침을 하고 덮개를 덮는다.
- 9. 원형 물건에는 받침대를 받친다.
- 10. 보관하기 전에는 불량검사를 실시한다.
- 11. 소화전이나 소화기 부근에는 통로를 확실히 보장한다.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3 / 13

## [양식 1]

# 작업장 안전점검표

작업장명	부서명	
점검일자	점검자	(서명)

## ※ 점검일은 매월 24일 전/후에 실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미흡	エハハら
1. 내·외부 창문 파손 여부				
2. 출입문 정상 작동 여부				
3. 건물 안전(균열 등) 상태				
4. 안전통로 확보 상태				
5. 청소 상태				
	6-1.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6. 화재예방활동	6-2. 퇴실 시 코드 ON/OFF			
0. 되세네이글이	6-3. 충전·전원선 벗겨짐			
	6-4. 소화기 비치 상태			
7. 조명 상태				
8. 사무실 누수 발생 여부				
9. 부서장 보고 필요 사항(있는 경우 작성)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3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4 / 13

## [양식 2]

